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특별교육

일 시 2024년 3월 29일(금) 15:00~17:00

장 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4층)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고용노동부

1

제정 배경 및 목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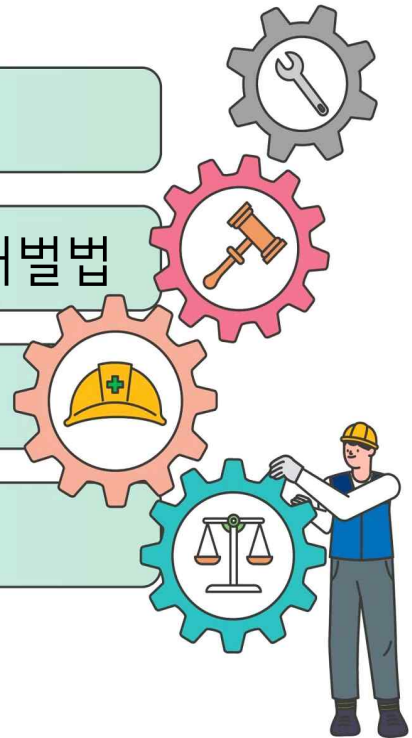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3

법령의 주요내용

4

자주하는 질문 및 사업 안내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기본적인 경영자의 의무입니다

'22년 한 해에만 874명, 23년 9월 기준 459명(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 사고 기준)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헌법제32조제1항

-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이하생략)
-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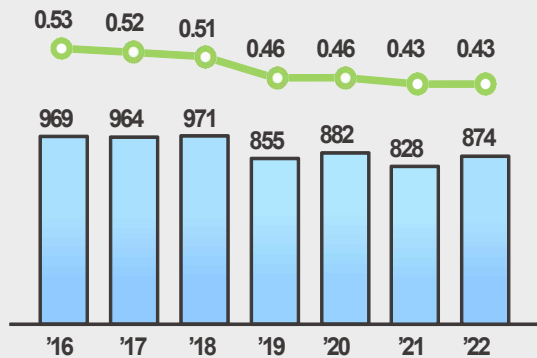


헌법재판소2007.8.30.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권리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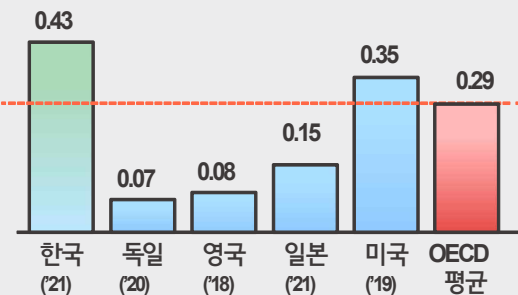
1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

사고사망자(명), 사고사망만인율(‰)



- 2022년 사고사망자 총 874명
- 2022년 사고사망만인율 0.43 ‰

사고사망율 OECD와 비교('21)



- 영국의 '70년대, 독일·일본의 '90년대 수준
* 영국 0.34('74), 독일 0.42('94), 일본 0.46('94)

3

3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

법제정
목적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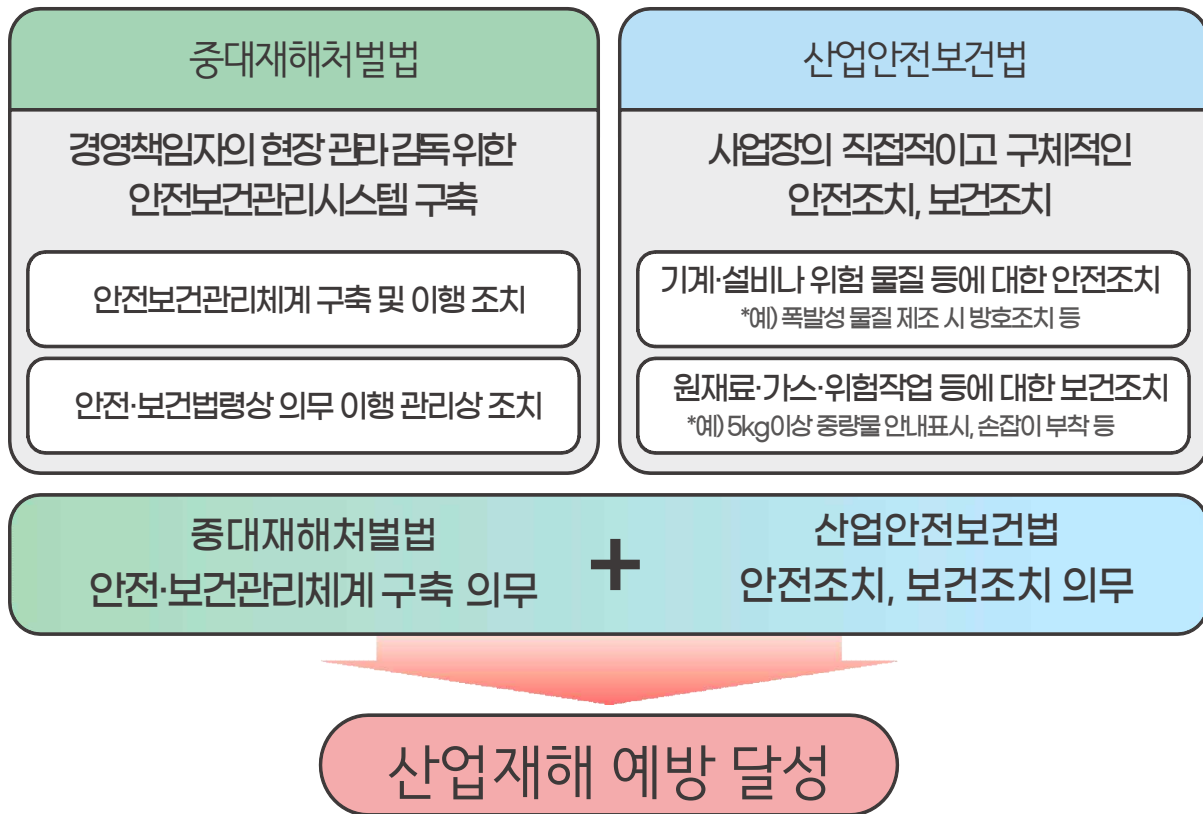
처벌규정
의 목적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

-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질을 높이라는 메시지

4



5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영책임자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 -다만, 현장소장, 공장장 등 각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영 제67조)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업종·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 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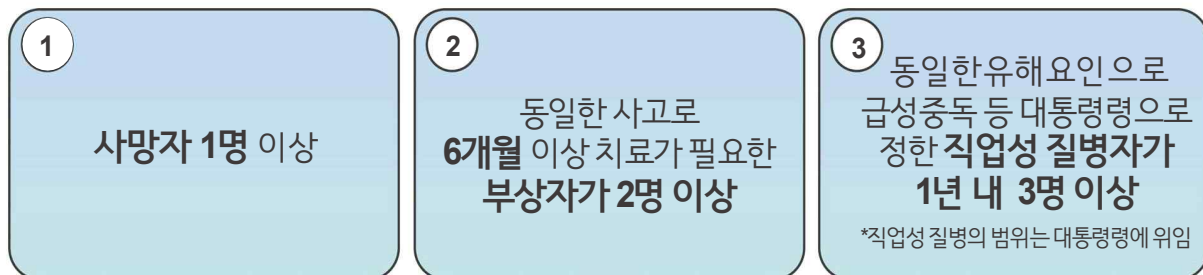
6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내용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② 재해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④ 안전·보건관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의안전조치 ①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시 ② 굴착·발파 등 위험 작업시 ③ 추락·붕괴 우려 있는 등 위험 장소에서 작업시 사업주의보건조치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 작업 ③ 환기·청결 등 적정 기준 유지
처벌수준	자연인 (사망) 1년 이상징역 또는 10억원 이하벌금(병과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징역 또는 1억원 이하벌금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벌금	자연인 (사망) 7년 이하징역 또는 1억원 이하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벌금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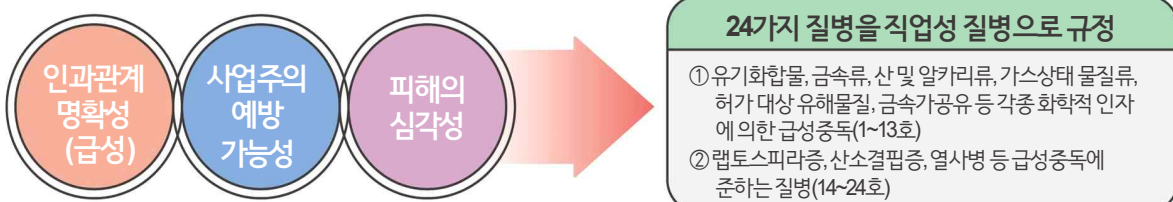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음

1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의 기준 마련]



2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정의

종사자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이 된 경우
-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9

2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정의

경영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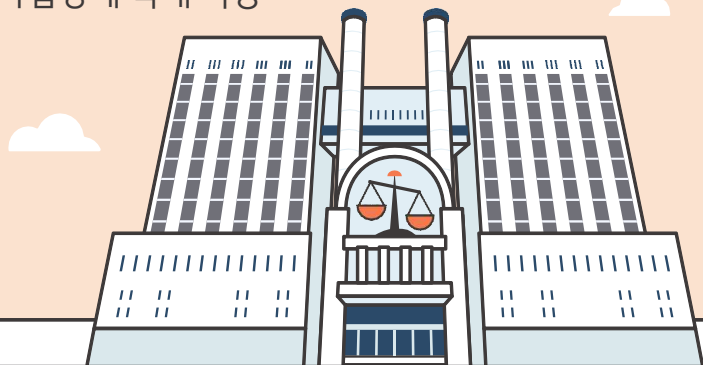
-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
*예)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
 - 형식상 직위·명칭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① 직무, ② 책임과 권한, ③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 형식적으로 안전보건담당이사 등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관련 예산, 인력 조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

10

3 법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2024.1.27.부터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
5명~**49명**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확대 적용



11

참고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과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참고)

상시근로자 = $\frac{\text{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text{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

산정
원칙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

산정 대상
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
-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 포함

※ 파견근로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근로자에 포함

12

4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⑨)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②)

*1,4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



13

5 기업 규모별 의무 비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9개)

조치 사항	50인 이상	50인 미만
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의 설정	○	○
②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설치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산안법 17~19, 22)	△	×
③ 유해,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
④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평가 및 관리 *50인 미만 사업장 일부 업종에 관리감독자 선임시 적용	○	△
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배치 *50인 이상 사업장은 1명 이상 선임, 20~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	○	△
⑦ 종사자의 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조치 여부 점검	○	○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의 마련, 조치 여부 점검	○	○
⑨ 도급·용역 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조치	○	○

☒ 관계법령상의 무이행·관리(4개), 재발방지대책(1개) 및 시정개선(1개) 조치 등 부여

14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법령의 주요내용

1-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목표와 경영방침이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방향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방법

- ① 사업또는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함
- ②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함
- ③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함

1- ②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구성·운영

50명미만
사업장 미해당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 전담 조직

-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업무에 관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함

전담 조직 설치 대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총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기업으로서

- ①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②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17

1-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

절차에 따른 확인·개선 여부 반기회 이상 점검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 도입, 그 절차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

18

대진단 지원사업 안내

안전보건공단 제주지부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산업안전
대진단**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왜 해야하나요?

-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온라인) PC·모바일로 접속하며, 접속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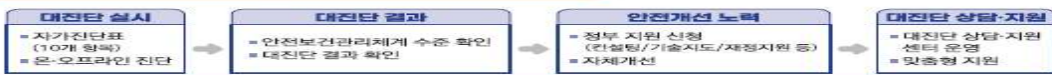
1단계
(PC)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http://www.kosha.or.kr>
(모바일) 우측의 QR Code 스캔

2단계
누리집에 표시된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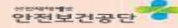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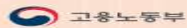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진행 되나요?



산업안전 대진단,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첫째,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왜 해야하나요?

-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중대재해 예방,
대진단으로 시작하세요!

집중실시간 1월~4월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온라인) PC·모바일로 접속하며, 접속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하세요.

1단계
(PC)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http://www.kosha.or.kr>
(모바일) 우측의 QR Code 스캔



2단계
누리집에 표출된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

QR Code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진행 되나요?

대진단 실시
■ 자가진단표
(10개 항목)
■ 온·오프라인 진단



대진단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확인
■ 대진단 결과 확인



안전개선 노력
■ 정부 지원 신청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 등)
■ 자체개선



대진단 상담·지원
■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운영
■ 맞춤형 지원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중대재해 예방,
대진단으로 시작하세요!

집중실시간 1월~4월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1544-1133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진행 되나요?

대진단 실시
■ 자가진단표
(10개 항목)
■ 온·오프라인 진단



대진단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확인
■ 대진단 결과 확인



안전개선 노력
■ 정부 지원 신청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 등)
■ 자체개선



대진단 상담·지원
■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운영
■ 맞춤형 지원

산업안전 대진단,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첫째,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4-산업안전실-43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중대재해 예방,
대진단으로 시작하세요!

집중실시간 1월~4월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1544-1133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방법



1544-1133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 자기진단 안내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5인~50인 미만)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안전수준을 진단해보고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참고하여 개선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법적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안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

-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입니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우리 회사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우리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

■ 상담·지원 센터

-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기진단 방법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 1544-1133)

자기진단 바로가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 "Ⅰ. 사업장 기본정보"를 제외하고 "Ⅱ. 위험도 및 대응"과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Ⅰ. 사업장 기본정보

page (1 / 6)

□ 귀사는 어떤 업종인가요?

제조업	건설업	기타(제조·건설 외)
☐	☐	☐

□ 귀사는 몇 명이 일하고 있나요?
(귀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은 얼마인가요?)

5인 미만 (공사금액 1억원 미만)	5인 이상 ~ 20인 미만 (1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0인 이상 ~ 50인 미만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인 이상 (50억원 이상)
☐	☐	☐	☐

□ 귀하의 직책(업무)은 무엇인가요?

경영자(사업주) (대표, 공장장, 임원 등)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관리감독자 (팀장, 직장, 반장 등)	근로자
☐	☐	☐	☐

이전

다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 "Ⅰ. 사업장 기본정보"를 제외하고 "Ⅱ. 위험도 및 대응"과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Ⅱ. 위험도 및 대응정도

page (2 / 6)

□ 귀사의 작업장과 근로환경은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 예) 일을 하는 동안 사고(경상, 중상, 사망 등) 또는 급성중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정도에 따라 판단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	보통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	☐	☐	☐	☐

□ 귀사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은 바로 개선·관리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이전

다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 "Ⅰ. 사업장 기본정보"를 제외하고 "Ⅱ. 위험도 및 대응"과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항목

page (3 / 6)

1.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등)가 정하고 있는 명확한 안전방침과 구체적인 목표가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2. 귀사에서는 안전보건 조직 또는 업무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를 정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이전

다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 "Ⅰ. 사업장 기본정보"를 제외하고 "Ⅱ. 위험도 및 대응"과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page (4 / 6)

3.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고 사용하고 있나요?

※ 예) 개인보호구 구입, 직원 건강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설치 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4.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5.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근로자들이 회사에 건의, 제안을 자유롭게 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이전

다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 "Ⅰ. 사업장 기본정보"를 제외하고 "Ⅱ. 위험도 및 대응"과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page (5 / 6)

6.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내용과 안전작업 절차 등을 서로 확인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7. 근로자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8. 사고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계획(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조치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이전

다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 "Ⅰ. 사업장 기본정보"를 제외하고 "Ⅱ. 위험도 및 대응"과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page (6 / 6)

9. 귀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또는 아차사고(다칠 뻔한 사고) 등에 대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 실행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10.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 평가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이전

결과보기

진단결과

인쇄

□ 기본정보

업종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제조업입니다.
규모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 20인 미만 (1억원 ~ 20억원 미만)입니다.
직책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직책은 경영자(사업주)(대표, 공장장, 임원 등)입니다.

□ 위험 및 대응

주요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양호	매우 양호
위험도				✓	
위험대응			✓		

□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항목

연번	주요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양호	매우 양호
1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		
2	안전보건 인력			✓		
3	안전보건 예산				✓	
4	위험성평가				✓	
5	근로자 참여·제안				✓	
6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	
7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8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		
9	재발방지대책 마련				✓	
10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		

종합평가



- 진단결과는 총점 100점 대비 70점입니다.
- 귀사의 위험수준은 안전하고, 위험 대응정도는 보통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잘 갖추고 있다는 응답이 (5개), 잘 갖추고 있지 않다 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개)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평가

구분	종합평가
1	❖ 귀사의 위험수준은 (안전하고/위험하고/보통이고), 위험 대응정도는 (높은/낮은/보통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잘 갖추고 있다는 응답이 (6개), 잘 갖추고 있지 않다 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개)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 귀사의 위험수준은 (안전하고/위험하고/보통이고), 위험 대응정도는 (높은/낮은/보통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잘 갖추고 있다는 응답이 (7개), 잘 갖추고 있지 않다 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개)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정보를 활용하여 자체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 귀사의 위험수준은 (안전하고/위험하고/보통이고), 위험 대응정도는 (높은/낮은/보통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잘 갖추고 있다는 응답이 (9개), 잘 갖추고 있지 않다 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1개)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갖추고 있지 않다 또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에 안내된 정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유지·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진단항목 및 응답에 따른 진단결과

진단항목		진단결과 및 지원연계
안전보건 관리체계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 (경계) 10개 항목 중 6개 이하에 긍정 응답 ☞ 안전보건관리체계 매우 부족, 반드시 지원 신청토록 안내 ■ (주의) 7~8개 항목에 긍정 응답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 자체 개선노력 및 지원제도 신청토록 안내 ■ (양호) 9개 이상 항목에 긍정 응답 ☞ 안전보건관리체계 유지·발전 노력 요청 및 정보 제공
	② 안전보건 인력	
	③ 안전보건 예산	
	④ 위험성평가	
	⑤ 근로자 참여·제안	
	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⑦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⑧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⑨ 재발방지대책 마련	
	⑩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진단결과 구분 기준】

- 산업안전 대진단 항목에 대한 사업장 자가진단 항목 응답 중, 부정·보통 응답의 개수를 기준으로 구분
- **(필수지원)** 진단항목의 부정·보통 답변 개수가 **4개 이상**(긍정 답변 6개 이하)인 경우
- **(지원선택)** 진단항목의 부정·보통 답변 개수가 **2~3개**(긍정 답변 7~8개)인 경우
- **(자체개선)** 진단항목의 부정·보통 답변 개수가 **1개**(긍정 답변 9개)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관련 정보

동영상 자료	책자형 자료
•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위험성평가 중심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떻게 해보자! • [위험성평가 제도 설명]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 위험성평가를 반영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건설업) 대규모 건설업 - (건설업) 소규모 건설업 - (제조업) 조선업 사업장 • 위험성평가 절차별 실천방법(제조업편) • 숏츠(Shorts) - 이지애의 안전잇수다 - #1 위험성평가 제도&근로자 참여 - #2 위험성평가 시기(상시평가) - #3 위험성평가 방법 - #4 위험성평가 핵심요소 - #5 위험성평가 TBM 실천방법	www.kosha.or.kr 내용: 자가진단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실 분은 진단결과 하단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주세요. 확인 • 중대재해 사이렌 소개 •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23년) • 중대재해 사고백서('23년)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가이드 •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소규모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안내서 •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22년도) •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23년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교안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 • 건설분야 TBM 실천 가이드

정부지원사업 신청

정부지원사업 신청

「정부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① 검색 입력」과 직접 작성하는 「② 직접 입력」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① 검색 입력 > 선택
* ② 직접 입력 >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사업장명	사업장명을 입력해주세요.

주소 검색

소재지	
* 기본주소	기본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상세주소	상세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회사 연락처	회사폰()을 포함하여 입력해주세요.
* 신청자명	신청자명을 입력해주세요.

지원희망서비스 선택 (복수응답가능, 컨설팅 및 기술자도는 1개만 선택 가능)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위험성평가 포함) ☐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조건 확인
기술지도	☐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제조업 등)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한일승) ☐ 소규모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지원(화학업종)	지원조건 확인 지원조건 확인 지원조건 확인
	☐ 중소기업 안전환경 추력사고 예방지원(1억원 미만) ☐ 소규모 서비스업 안전관리 기술지원(건물관리 등 산업)	지원조건 확인 지원조건 확인
	☐ 벤처사업장 조성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지원조건 확인 지원조건 확인
	☐ 안전동행지원	지원조건 확인
교육	☐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담당자 교육	교육과정 확인 교육과정 확인

□ 상담·지원 센터

「지원신청을 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남겨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리고 지원희망 서비스에 대해 우선 또는 방문을 통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전단 상담·지원 센터 ☎ 1544-1133

신청

정부지원사업 신청

「정부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① 검색 입력」과 직접 작성하는 「② 직접 입력」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① 검색 입력 > 선택
* ② 직접 입력 >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사업장명	사업장명을 입력해주세요.

주소 검색

소재지	
* 기본주소	기본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상세주소	상세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회사 연락처	회사폰()을 포함하여 입력해주세요.
* 신청자명	신청자명을 입력해주세요.

신청

지원희망서비스 선택 (복수응답가능, 컨설팅 및 기술자도는 1개만 선택 가능)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위험성평가 포함)	지원조건 확인
	☐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조건 확인
기술지도	☐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제조업 등)	지원조건 확인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한일승)	지원조건 확인
	☐ 소규모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지원(화학업종)	지원조건 확인
	☐ 중소기업 안전환경 추력사고 예방지원(1억원 미만)	지원조건 확인
재정지원	☐ 소규모 서비스업 안전관리 기술지원(건물관리 등 산업)	지원조건 확인
	☐ 벤처사업장 조성지원	지원조건 확인
	☐ 산업재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지원조건 확인
	☐ 안전동행지원	지원조건 확인
교육	☐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교육과정 확인
	☐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담당자 교육	교육과정 확인

□ 상담·지원 센터

「지원신청을 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남겨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리고 지원희망 서비스에 대해 우선 또는 방문을 통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전단 상담·지원 센터 ☎ 1544-1133

2024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법 제4조 및 제5조)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대상

제조·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건설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사업장 비용 부담

사업장 규모별 비용 부담 차등 적용

구분	자부담 부과 없음	자부담 부과	
		(수수료 3만원/회)	(수수료 12만원/회)
제조업 등	근로자수 5~29인	근로자수 30~49인	근로자수 50인 이상
건설업	(종합) 1천위 초과 (전문) 200위 초과	(종합) 301~1천위 (전문) 20~200위	(종합) 201~300위 (전문) 20위 이내

※ 자부담금은 1회차 컨설팅 종료 시 컨설팅 기관에 납부, 다음 회차 시작 전까지 미납 시 컨설팅 지원 종료

컨설팅 방법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 또는 공단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2~4개월, 제조업 등 4~5회, 건설업 7회)

민간 전문기관 안전·보건관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인, 노무법인 등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건설안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24. 1월 말 기관 선정 후 게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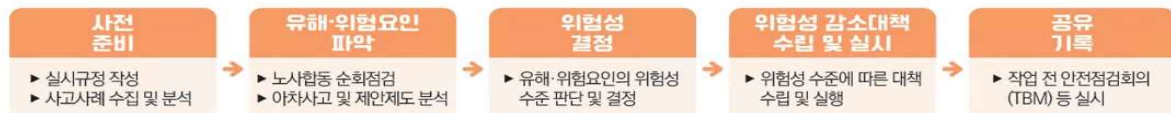
2024년도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사업 안내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위험성평가가 뭔가요?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주도하여 근로자와 함께 위험을 찾아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안내

구분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 인정
개요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컨설팅	사업장에서 작성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에 충족할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서 발급
신청 방법	▶ 전 업종(건설업 제외)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 건설업종 :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 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 전 업종(건설업 제외)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업종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비고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 (사업장직원 회원가입 필요) ※ 공단이 아닌 민간 컨설팅 기관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제조업 등)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목적

- ◆ 안전규제 사각지대인 초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및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을 감소에 기여

지원대상

- ☞ 50인 미만 제조업 등 [건설업, 기타의사업(건물관리업, 음식업) 제외]

지원내용

- ① (위험성평가 직접지원)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사업주·근로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지원방법

- ☞ 사업장 당 최대 3회 방문 지원

(1회차) 사업장 현황파악
▲ 위험요인 발굴 ▲ 위험성평가 안내

(2회차) 위험성평가지원
▲ 위험성평가 직접지원

(3회차) 확인·연계·교육
▲ 재정지원·컨설팅연계·TBM교육 등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전업종)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목적

- ◆ 자율 보건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보건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지원 사업장의 업무상질병 및 질식재해 예방에 기여

지원대상

-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전업종, 공사금액 1~120억 건설업 포함] (단, 건물관리업 및 음식업 제외)

지원내용

- ① (위험성평가 직접지원) 화학물질, 질식재해, 근골격계질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공정 등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사업주·근로자 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지원방법

- ☞ 사업장 당 3회 방문 지원(최대 4회 지원가능)

(1회차) 사업장 현황파악
▲ 위험요인 발굴 ▲ 위험성평가 안내

(2회차) 위험성평가 지원
▲ 위험성평가 직접지원

(3회차) 확인·연계·교육
▲ 재정지원·컨설팅연계·TBM교육 등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지원 [화학업종]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목적

- ◆ 안전규제 사각지대인 조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및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을 감소에 기여

지원대상

- ☞ 50인 미만 제조업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 제외]

지원내용

- ① (위험성평가 직접지원)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사업주·근로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지원방법

- ☞ 사업장 당 최대 3회 방문 지원

(1회차) 사업장 현황파악

▲ 위험요인 발굴 ▲ 위험성평가 안내

(2회차) 위험성평가 지원

▲ 위험성평가 직접지원

(3회차) 확인·연계·교육

▲ 재정지원·컨설팅연계·TBM교육 등

2024년도

초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지원[1억원미만]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목적

- ◆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 중 사고사망 발생 위험도가 높은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기술지원을 통해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에 기여

지원대상

- ☞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산재 미가입 현장 포함) 및 지붕공사 전문건설업체 본사

지원내용

- ✓ 핵심 안전수칙(추락 예방조치 등) 및 사고사망 주요 위험요인 집중 확인 및 개선 지원
- ✓ 기타 사고성 재해발생 위험요인 도출 및 구체적 개선 대책 제시
 - 지붕, 사다리, 단부·개구부, 이동식비계, 고소작업차, 달비계, 철골, 이동식크레인, 굴착기, 사면·암반 등
- ✓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공유가 가능토록 맞춤형 standing 교육

지원방법

- ☞ (건설현장) 1회(최대2회), (본사) 1회 한정

2024년도

소규모 서비스업 안전관리 기술지원[건물관리 · 음식업]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목적

- ◆ 50인 미만 서비스업 중 사고사망 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 ·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반의 기술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사고사망만인을 감소에 기여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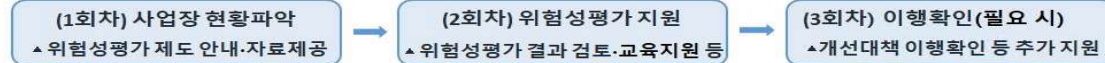
- ☞ 50인 미만 서비스업 [건물관리업 및 음식업]

지원내용

- ✓ (사고사망 위험요인 · 필수 준수사항 지원) 위험성평가 기반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사업주 · 근로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지원방법

- ☞ 사업장 당 최대 3회 방문 지원



2024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보조금) 안내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 상사근로자수 50인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50인미만 사업장 중 해당산업*를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건설업제외, 방호장치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산업 - 중·소기업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중소기업인) 제출 - 태양광(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및 엘리베이터(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설치 작업 수행 사업장	- 사고사망 예방활동 또는 고용노동부의 권고,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제공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자율안전체계구축 등 소기술지도 결과 시작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원: Quick Pass)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 산재보험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액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법』과 『바닥·구조물제공사법』 2개 법 하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허도급) 포함	차스텐비계 및 안전방망을 설치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중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소규모 이하 사업장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자계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를 보유(2호~24 호) 또는 임대사업주(단, 근로자 50인 이상,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업체, 사무실 및 건축물 등본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등 지원제외	중·소사업장에서 전기충격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통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공통요건: 산재보험보험 가입(원남)

2024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1 사업개요

- ▶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금 지원

사업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규칙)

2 지원대상

-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50인미만 중점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 융자금 지원 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ims.go.kr>)에서 지원합계 확인
- *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신청·결정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 결정 불가
 - 단, 안전동행지원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 * 24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재신청·결정 불가



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내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지원자격

구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지원 대상	제조업(사내하청 제외)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①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을 보유(뿌리기업 확인서로 확인)하거나 ②고위험 6대 업종*(산재보험기준 중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③수제품 및 기타 제품제조업 ④식료품제조업 ⑤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 ⑥금속제련업	제조업(사내하청 제외)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①원청이 직접 또는 ②상생관련기금 연계하여 지원받거나 ③공단 상생협력사업을 통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위험 공정개선에 필요한 기계 · 설비 등	
지원 조건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 (최대 1억원)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 (최대 8천만원) 원청지원 10% 공동지원

※ 자부담 비용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결정 후 신청한 경우에 한함)

2024년도

안전보건교육과정(인터넷) 개설 안내

안전보건에서
국민안심으로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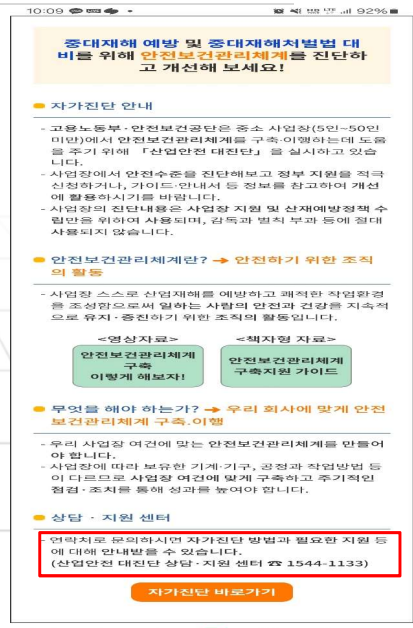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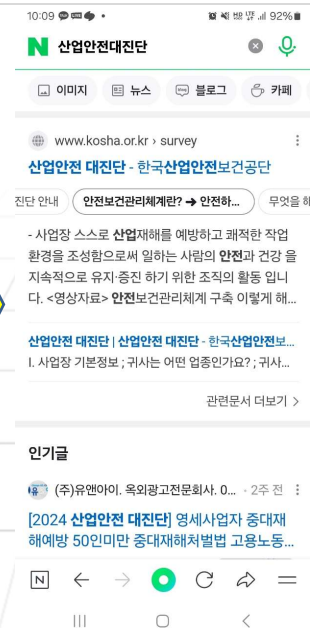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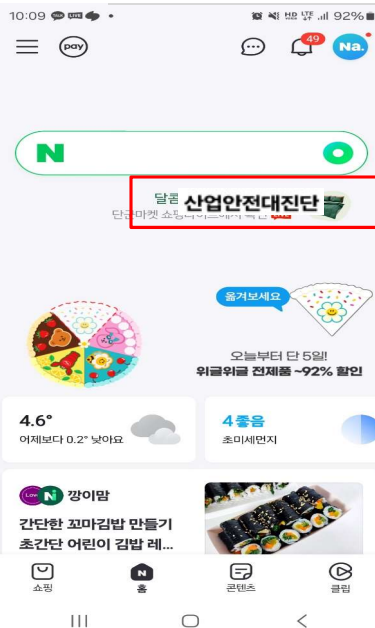
교육분야	과정명	교육시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활동 지원교육	사업주(관계자)가 알아야 할 자기규율 예방체계(Ⅰ)	2H
	사업주(관계자)가 알아야 할 자기규율 예방체계(Ⅱ)	2H
	사업주(관계자)가 알아야 할 자기규율 예방체계(Ⅲ)	2H
	사업주(관계자)가 알아야 할 자기규율 예방체계(Ⅳ)	2H
	사업주(관계자)가 알아야 할 자기규율 예방체계(Ⅴ)	2H
	사업주(관계자)가 알아야 할 자기규율 예방체계(Ⅵ)	2H
	사업주(관계자)가 알아야 할 자기규율 예방체계(Ⅶ)	2H
지역특화 사망사고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과정	8H
	공공기관 근로자(종사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Ⅰ)	3H
	공공기관 근로자(종사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Ⅱ)	3H
	공공기관 근로자(종사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Ⅲ)	3H
	공공기관 근로자(종사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Ⅳ)	3H
	형평한직업 안전보건 기초교육	2H
	건설현장 화재·폭발예방 화재감시자교육	4H
법정·정책교육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교육(Ⅰ)	2H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교육(Ⅱ)	2H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교육(Ⅲ)	2H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교육(Ⅳ)	2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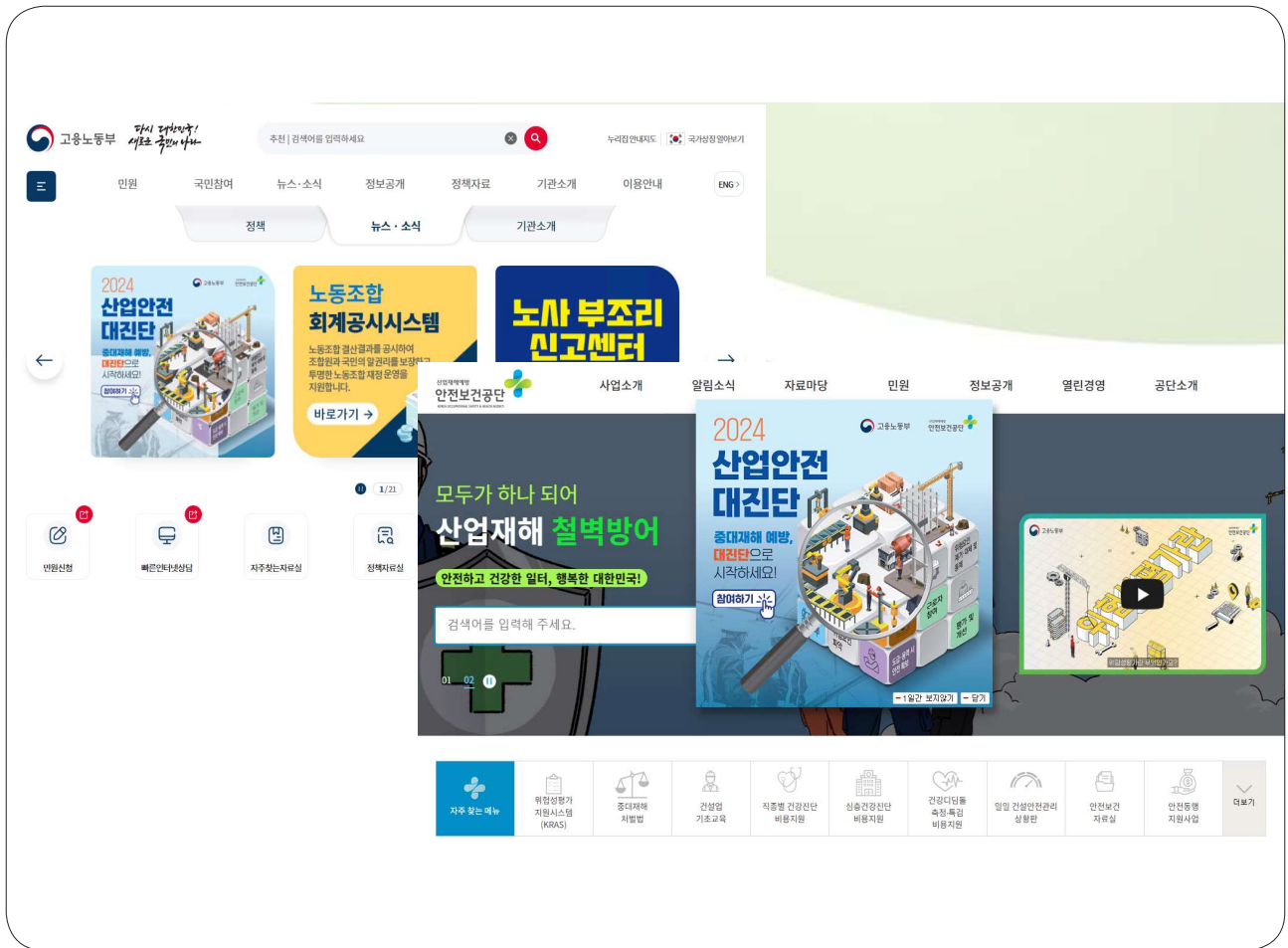


교육신청 방법

① 인터넷교육센터(safetyedu.net) 접속	② 회원가입진행(본인인증 및 소속사업장 정보기입)
③ 인터넷교육신청에서 교육분야 선택	④ 신청하려는 교육과정 수강신청(맨 오른쪽 버튼)
⑤ 나의강의실에서 나의 학습활동 선택	⑥ 수강신청을 한 교육과정 수강

모바일 대진단 실시(예, NAVER 간편 접속)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위험을 찾으면 안전이 보입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김 희 근

국장 / 교육운영국
기계안전기술사 / 산업안전지도사

63125 제주시 신대로 64, 2층(연동, 건설회관)
TEL : 064-753-8237, 직통: 070-4940-2577
FAX : 0507-351-7043
M.P : 010-7141-9893
E-mail : toetoe55@safety.or.kr
<http://www.safety.or.kr>

제주도 중대재해 사례(2022년, 2023년)



□ 2023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7건(잠정)

연번	발생일	업종	중처법 대상여부	재해유형	사고내용
1	1. 18. (1. 20.사망)	제조업	비대상 (50인미만)	끼임	외국인근로자(필리핀, 남, 30대)가 골판지 제조기계 마찰 부분에 윤활유를 주입하다가 기계 회전축에 작업복이 말려들면서 끼임 사고 발생, 1. 20. 사망
2	3. 9. (3. 24.사망)	건설업	비대상 (50인미만)	추락	09:30경 비스타케이호텔에서 내·외부 벽체 도장작업을 위해 고소 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치료 중 3. 24. 사망
3	3. 31.	건설업	비대상 (50인미만)	끼임	한림2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자재 부설 중인 포크레인과 자재 사이에 근로자가 끼여 사망
4	4. 6.	건설업	비대상 (50인미만)	추락	대정읍 주택 건물 외부 나선형 계단 철거를 위해 2층 높이 계단 위에서 절단 작업 중 계단이 분리되면서 7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5	8. 7. (8.13.사망)	건설업	대상	추락	조천읍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외벽 작업 정리 중 안전난간에 체결된 클램프 연결부파단으로 5.8m추락하여 치료 중 8. 13. 사망
6	9. 6.	건설업	비대상 (50인미만)	끼임	애월읍 LNG 배관 이설 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근로자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사망
7	11. 7.	건설업	대상	추락	대정읍 보성리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4m 높이에서 비계 설치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제주 산업재해 사망 증가율 전국 최고

2022년



제주MBC

제보 카톡ID: 제주MBC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자
1년내 3명 이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사항 2 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법 제54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안전모에 혈흔 묻혀 '산재은폐' 경영책임자 기소

✎ 홍준표 기자 | ☎ 승인 2024.01.03 18:56

노동자 추락사 뒤 안전모 착용한 것처럼 꾸며... 중대재해처벌법 검찰 직접 입건 첫 사례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하지한 경고 등 직접적 중대재해한 경	3,000	3,000	3,000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2022년 1월 27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법정 특고

보호대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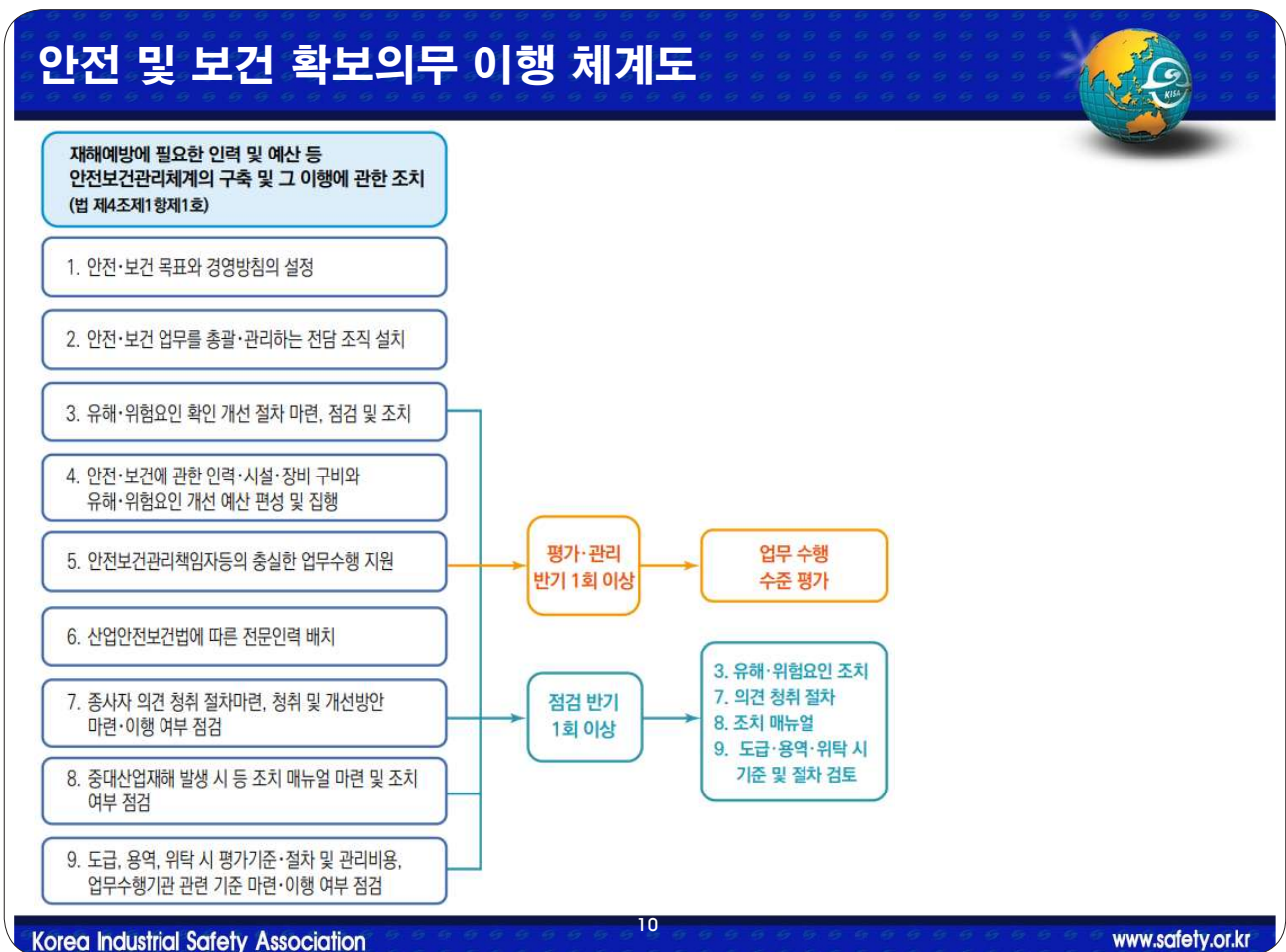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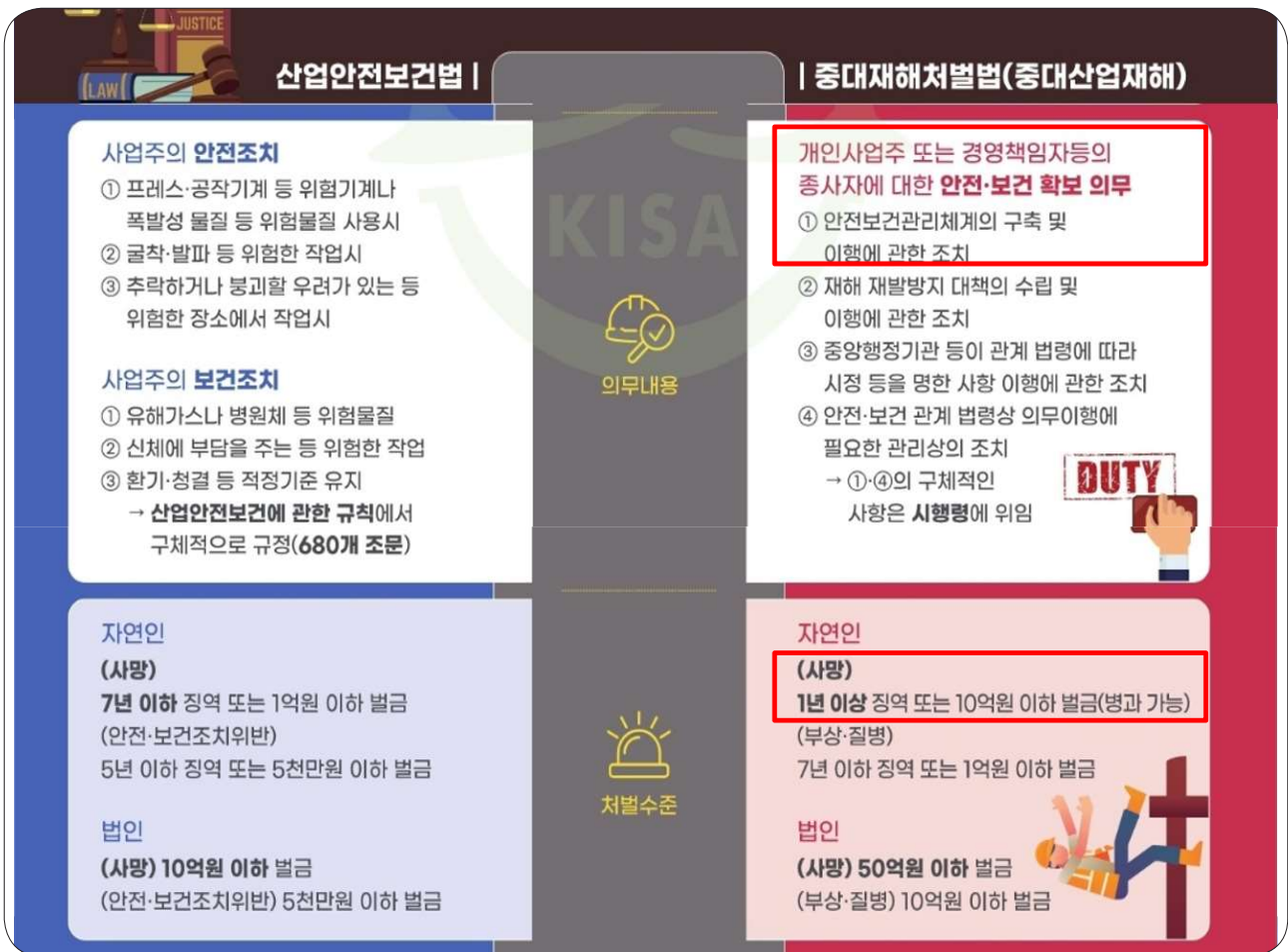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자
1년내 3명 이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도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2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2.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
4. 미 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점검 반기
1회 이상

2. 의무 이행 필요 조치
4. 교육 실시 필요 조치

건물 붕괴(시민재해)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순간 CCTV 영상... 우산 쓰고 달려가는데 와르르

2023.04.05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13

www.safety.or.kr

1.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재해
지도



재난대책기관
전화번호



재해위험
지구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관련사이트

재난안전대책본부
119안전신고센터
제주재난안전문자신청

기상특보별주민행동요령
비상시국민행동요령
안전교육 리더 네트워크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알기쉬운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자료실

자료실

☞ 주소복사

☞ 인쇄하기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9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건 경영방침	①	안전정책과	2024-03-19	3
8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공유	②	안전정책과	2023-05-24	60
7	「2023년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공유	②	안전정책과	2023-05-24	35
6	도 내 4대 악성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홍보영상	①	안전정책과	2022-10-07	68
5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동영상	①	안전정책과	2022-02-25	127
4	목업 예방관련 자료	①	안전정책과	2021-07-30	136
3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람이	①	안전정책과	2021-06-24	133
2	안전문화 로고 송 "세이프 제주"	①	안전정책과	2021-06-22	141
1	산업재해는 이제 그만! 제주도, 안전신포등제 추진	①	안전정책과	2021-06-20	330

제목

검색어

검색

초기화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14

www.safety.or.kr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주특별자치도는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의무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2.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3. 구성원 모두가 안전보건 기준과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종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2. 7.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2. 전담조직 설치



3.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반기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시행령 제4조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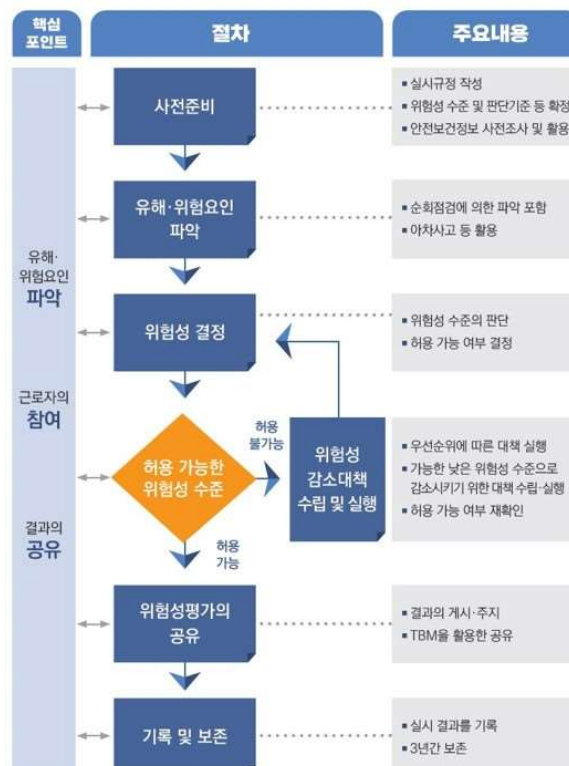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단위 : 백만원)

* 전년도는 결산기준, 당해년도는 편성기준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illegible]



#01

몇시간 착용

몇개월 착용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OR



#06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OR

잠깐 답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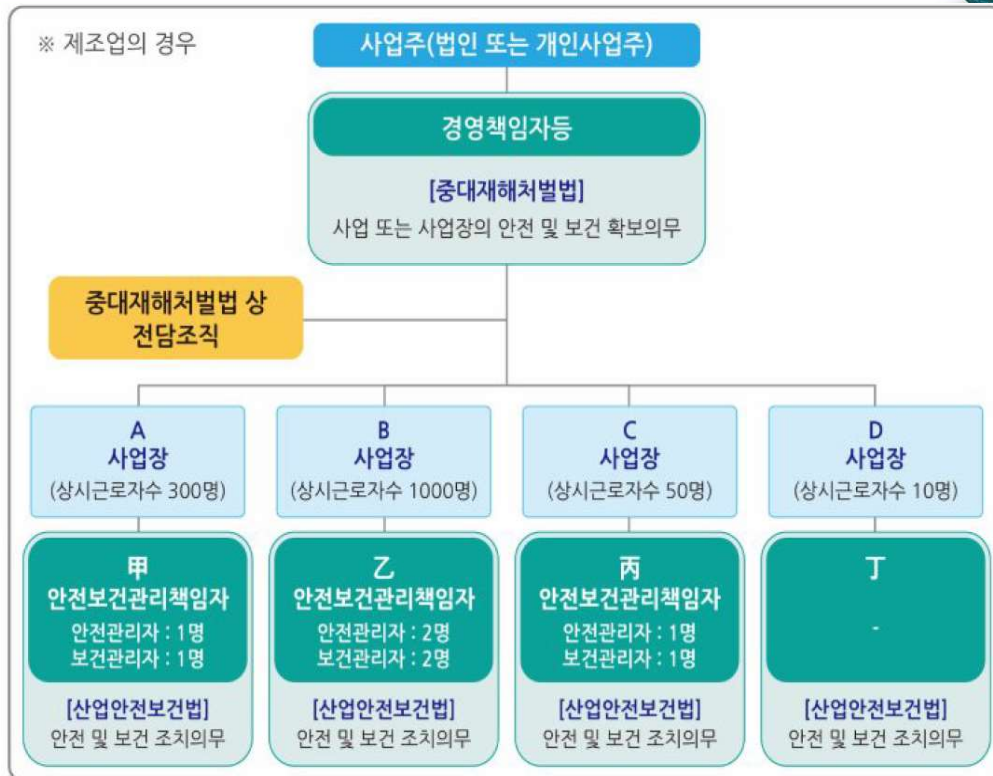
한참 답답!

안전대 지급 및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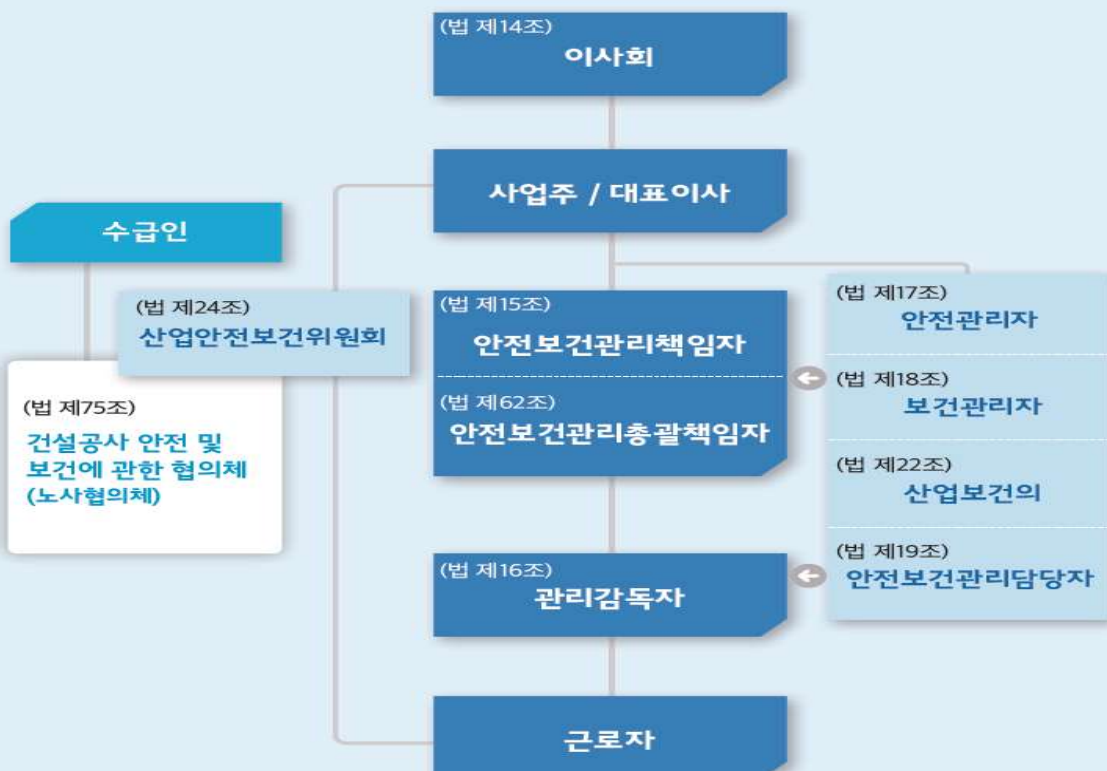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대 지급 업무, 모용구 민방 06

5. 관리책임자 등 충실한 업무지원(반기 점검)



6. 전문인력 배치(산업안전보건법)



7.종사자 의견 청취(반기 1회이상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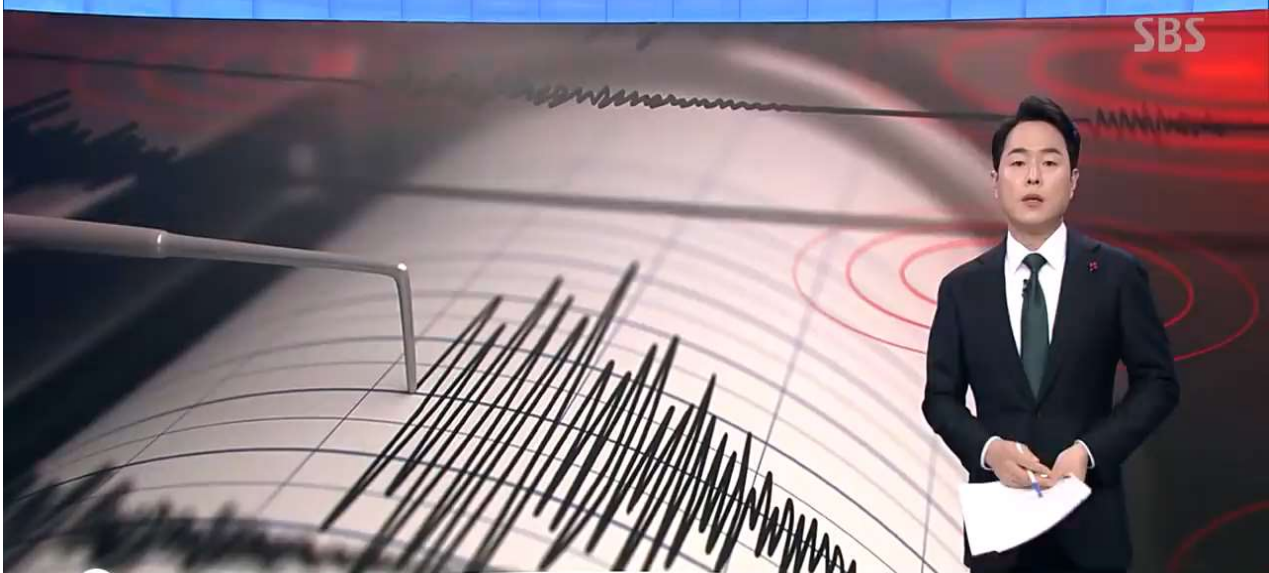


별지 1] 아차사고 접수대장

아차사고 접수 대장						
부서명 :						
번호	접수일자	보고자명	검 토			주관부서
			등급	검토일	검토자	

제주도 지진

2021.12.14(화) 17시



진동에 '혼비백산'..허겁지겁 탈출

종사자 의견 청취(반기 1회이상 점검)



TBM 실시 - 작업 전 필수사항 확인 및 의견청취 조사 확인

작업 전 안전점검(TBM) 일지		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팀장
TBM 일시		2023년 09월 04일 09:30 - 09:45	TBM 실시 장소	
근로자 작업 내용		A 파이프(WC) 파이프 라인 보수 작업 - 파이프 pump 라인 정비 - 파이프 라인 교체 (100%) 실시		담당 작업자
작업자 건강상태		중립함, 전원함		
작업 시 유해위험요인	① 중립함 이상작업 시 유해위험요인	① 2인/조작업		
	② 유해위험요인으로 파이프 라인 손상	② 안전장비 착용		
작업관련 위험성평가 공유사항	③ 고압전선 노출시	③ 안전장비 착용, 2인/조작업		
	1. 중립함 이상작업 시 유해위험요인	2. 파이프 라인 손상 시 유해위험요인		
기타 전달 사항	3. 고압전선 노출시	4. 안전장비 착용		
	5. 안전장비 착용	6. 안전장비 착용		
작업자 의견	7. 안전장비 착용	8. 안전장비 착용		
	9. 안전장비 착용	10. 안전장비 착용		
의견 확인 및 특이사항		11. 안전장비 착용		

8.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작성(반기1회 이상 점검)



지. 비상 시 대비 및 대응체계

천재지변 시나리오			
상황대응	책임자	협조부서	비고
1. 사고 즉시 초기 대처를 한다. → 전원 OFF 및 주변 경계, 담당 본부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 마간 및 공휴일에는 휴무직업자를 통해 비상연락망을 가동한다. → 인명피해 발생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한다(119신고 등).	최초 발견자	전 부서	
2. 비상사태 대응 조직을 편성한다. → 담당 본부장은 현장상황 관리 지휘부를 설치하고 재해복구 차량 및 장비를 준비한다. → 재해 즉시 비상사태 조직을 편성하고 가동한다. → 전 사원은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재해지역 복구를 수행한다.	본부장		
→ 소수방문대는 수해지역 유류밸브 및 전원을 차단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침수, 파손 방지를 위해 재해지역 복구를 수행한다(모래주머니, 마대 등). → 사고지역 접근 곤란 시 담당 본부장이 준비한 차량 및 복구 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복구작업을 수행한다. → 의료구호분대는 환자 발생시 안전한 곳으로 환자를 대피시킨 뒤 응급조치를 수행하고 구급차 도착 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소수방문대		
→ 방호복구분대는 시설관리팀과 협조하여 재해로 인해 파손된 설비, 건물, 시설물 복구를 수행한다. → 재해 지역에 있는 장비, 설비의 세척 및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방호복구분대		
3. 방호복구분대는 시설관리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재해복구 후 전기, 설비 및 유틸리티를 점검한다.	방호복구분대	시설관리팀 및 전 부서	
4. 전 부서는 소손된 시설 및 장비 복구 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재해복구 작업을 마무리한다.	각 임장	전 부서	

9.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마련·이행여부 점검(6개월)

I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업장명:

구분	배점	득점
합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5	
2. 계획수립	●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3. 구조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원청 / 하청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경영책임자 처벌

Q3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요?

A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사망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 10명 이상 발생
책임 주체	사업주: 사업을 하는 사람 경영 책임자: 경영 총괄 권한과 책임을 진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 중앙행정기관장과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범죄 구성 요건	사업주·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법정형: 사망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벌금 양벌규정: 법인도 개인과 함께 처벌,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시 10억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경영 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 이내 손해배상

-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함
-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 2022.1.12.)

자료: 고용노동부

The JoongAng

망각(lapse)



옛날 타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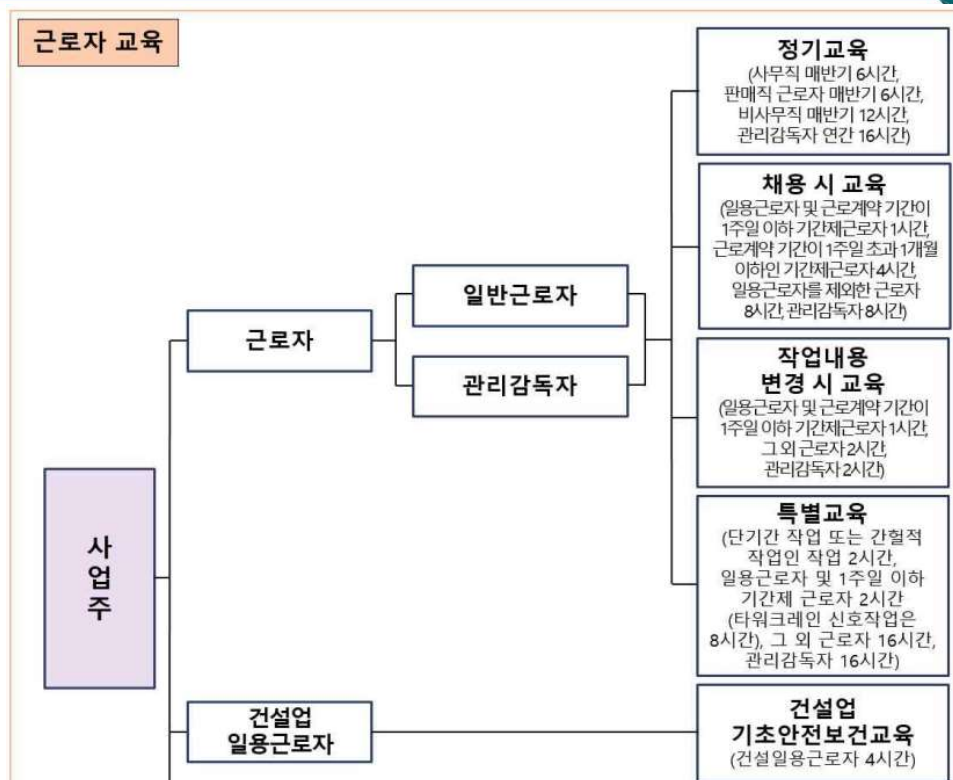
습관이 무서운 이유



미필적^고의 未必的故意

법을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산업안전보건교육 체계도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및 재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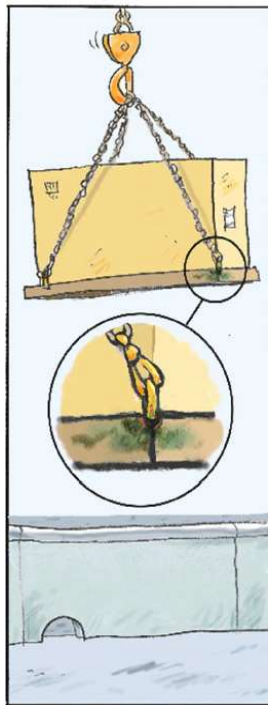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및 재판 현황 (4월 30일 기준)

※순번은 기소 순

순번	사건 요약	관할	현황
1	두성산업, 10명 독성간염	창원지법	1심 중
2	엘디에스산업개발, 1명 추락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1심 중
3	삼강에스앤씨, 1명 추락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1심 중
4	한국제강, 1명 방열판 충격 사망	창원지법 마산지원	1심 대표에게 징역 1년(법정 구속) 선고, 법인에 벌금 1억원 선고
5	온유파트너스, 1명 추락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벌금 3000만원 선고
6	건륭건설, 1명 철근 충격 사망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중
7	엠텍, 1명 기계 작업 중 사망	울산지법	1심 중
8	시너지건설, 1명 파이프 충격 사망	인천지법	6월 1심 선고 예정
9	만덕건설, 1명 굴착기 사망	창원지법 마산지원	1심 중
10	태성종합건설, 1명 추락사	춘천지법	1심 중
11	제동종합건설, 1명 구조물 무너져 사망	제주지법	1심 중
12	평화오일씰공업, 1명 공구 노출 사망	대구지법 서부지원	1심 중
13	홍성건설, 1명 포클레인 추돌 사망	대구지법 서부지원	1심 중
14	삼표산업, 3명 토사 붕괴 사망	의정부지법	1심 중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하인리히 법칙
'1:29:300'



아차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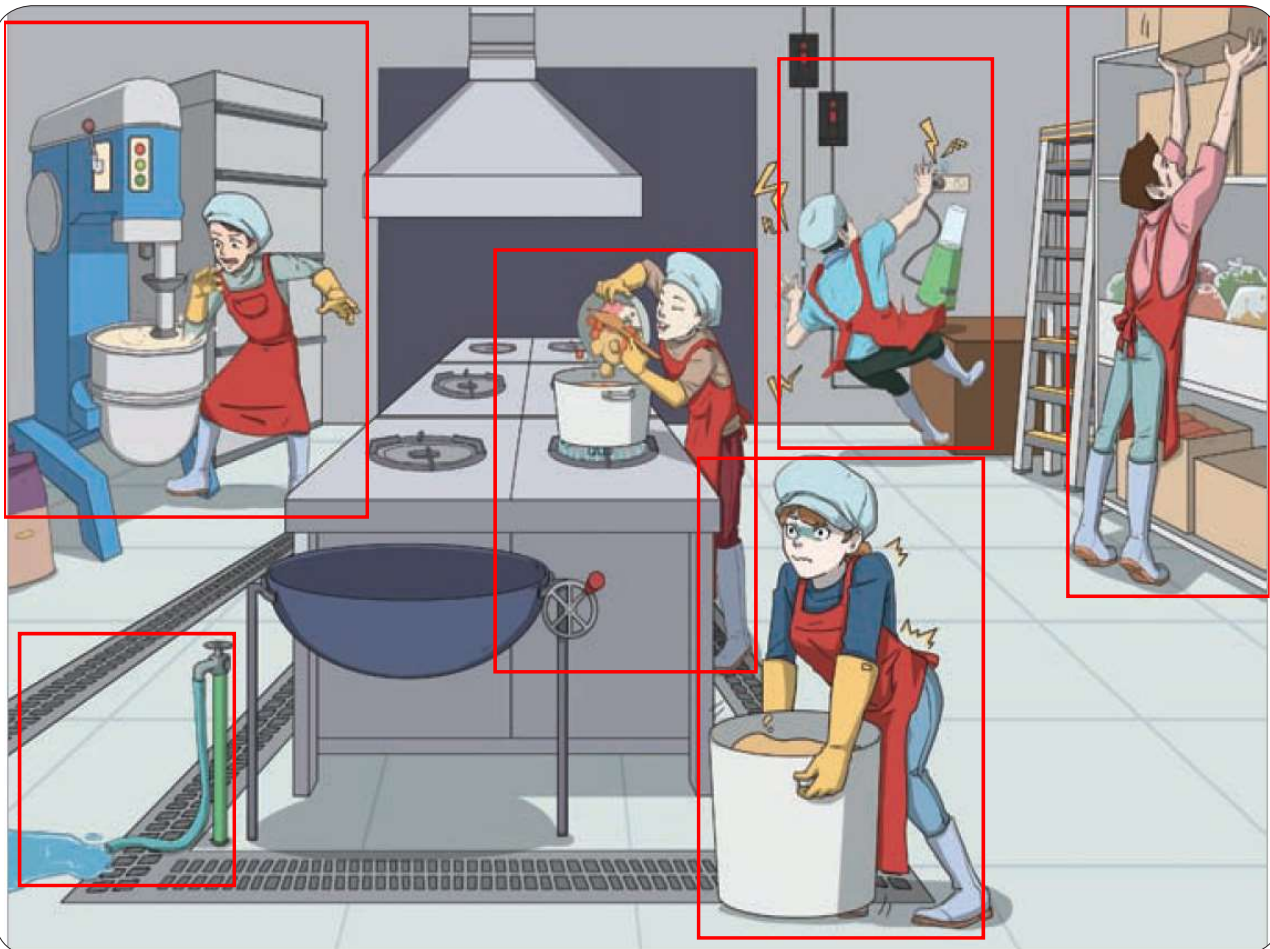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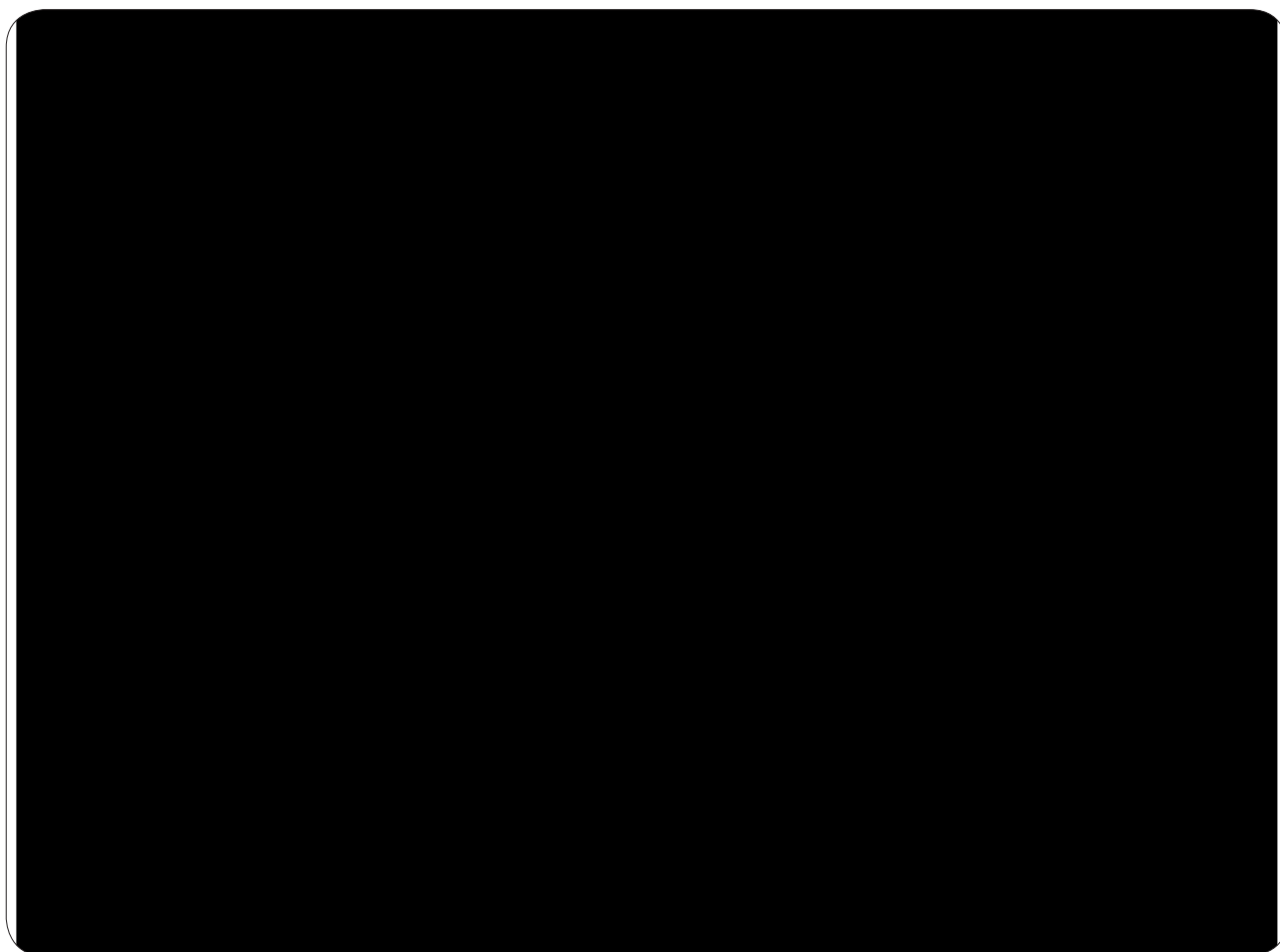
재해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39

www.safety.or.kr







동굴과 터널



Q&A

 대한산업안전협회

